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5,950,982	9,478,529
일반회계	293,156,554	8,794,697
특별회계	22,794,428	683,833
기타특별회계	22,794,428	683,833
상수도특별회계	4,780,785	143,42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45,306	31,35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90,219	41,707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6,211	2,286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23,991	6,72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38,846	13,16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770,463	293,11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594,568	137,837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116,005	3,480
기반시설특별회계	37,911	1,137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58,713	1,761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68,510	2,055
수질개선특별회계	192,900	5,787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55,79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088,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간주예산)